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 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도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사업소 ○○○○과)

② 광주광역시 ○○○○사업소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3. 1.부터 2016. 11. 3.까지, 지방○○○○○ ○○○은 2015. 3. 1.부터 현재까지 각각 광주광역시 ○○○○사업소 ○○○○과에서 ‘○○○ 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감독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개인하수도’는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

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의 관리 직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등산국립공원의 관리를 위임·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5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1]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구분	북부 ○○○ 임대사업소	○○ 노인복지타운	○○동 다목적체육관	○○○ 화장실	○○○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시설용량 (톤/일)	3	5	30	10	180
처리공법	호기성 생물학처리	현수미생물처리	접촉산화법	접촉산화법	APB-SBR
설치신고일	2015.12.15	2010.1.29	2011.11.24	2016.6.22	1997 (최초) 2011.10.16(증설)
설치·관 리자	○○○○○○○ ○○팀	○○복지재단 ○○농인복지타운	광주광역시○○○ ○○○○부	광주광역시 ○○○○○○과	○○○○사업소 ○○○○과

※ 광주광역시 북구 제출자료 재구성

광주광역시 ○○○○과는 2012. 12. 31.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이 결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252호)됨에 따라, 2013. 3. 4. ‘○○사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을 제외한 ○○○국립공원 관리직무에 대하여 환경부(이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와 인계·인수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사업소는 인계·인수협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을 공원시설로 간주하고 ○○○국립공원사무소에 인수요청 문서(2013. 0. 0.)를 보냈다.

2015. 3. 24. 환경부 ○○○○과에 위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은 설치자 및 소유권자인 광주광역시에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는 회신(2015. 0. 00.)을 받았으며, 이후 2016. 3. 29. 광주광역시 ○○○○사업소는 ○○사 집단시설지구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주체 여부를 재 질의하였고 환경부 ○○○○과는 ○○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은 광주광역시가 설치하고 소유하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함께 처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등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여 공공하수도(이하 “공공하수도”라 함)로 관리될 수 있도록 회신(2016. 6. 3.)함으로써 ○○○ 집단시설지구 내 오·하수처리시설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해야 하는 시설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사업소는 2016. 7. 21. ○○○국립공원사무소에 ○○○ 집단시설지구 이주계획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철거 또는 폐쇄 전까지 사

용료 형태의 운영비용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업소와 ○○○국립공원사무소는 2016. 8. 24. ‘○○○국립공원 ○○사지구 오수처리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립공원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사업소에 매년 1천만원을 ○○사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 및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 명목의 비용으로 지불하였다.

결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사업소에 광주광역시가 운영·관리 주체인 ○○○ 집단시설지구 내 오·하수처리시설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국고 1천만원을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공공하수도로 관리 전환 요청 미이행

광주광역시 ○○○사업소는 환경부 ○○○과의 질의회신(2회)에 따라 광주광역시 ○○○과에 ‘○○○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2017. 9월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사유로 부당하게 위 오수처리시설을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인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 개인하수도 운영비용 부담 징수

광주광역시 ○○○사업소는 2회에 걸쳐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해 ○○○국립공원사무소에 공공하수도를 인계하지 못하게 되자, ○○○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 및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매년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은 ○○○○

사업소에서 직접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업무협약서를 명분으로 ○○○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지방○○○○○ ○○○과 지방○○○○○ ○○○은 2015. 3. 24.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인계·인수 관련 질의 등 2회에 걸쳐 환경부 질의를 통하여 ‘○○사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이 공공하수도시설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광주광역시 ○○○○과에 ‘○○○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전환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016. 7. 21. “○○○국립공원 내 ○○사지구 오수처리장 사용료 등 지원 협조”와 2016. 8. 17. “○○○국립공원 내 ○○사지구 오수처리장 관련 협약서 제출”을 통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사무소와 광주광역시 ○○○○사업소 간에 부당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국고 2천만원을 지원받은 총괄책임과 담당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공하수도로 관리하고, ○○○국립공원사무소와 부당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받은 운영비용 2천만원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